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8-88
----------	------

제출년월일 : 2018.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사전절차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산시의회 동의를 위한 규약(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고 가입절차를 밟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5조 의거)

※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이며, 기존 아동친화도시인증 받은 도시와 인증 추진 중인 도시가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역간 협력을 도모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협업해 모든 사람이 살기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현황

-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 : 도봉구(이동진 구청장)(2018.9.13.~)
- 가입현황 : 61개 지자체 / 31개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인증(2018.10월말기준)
  - ☞ 현재 규약의 별표1에는 2018.8.31.기준으로 59개 지자체로 작성되어 있으나, 9월 이후에 인천광역시, 전남 장흥군이 추가 가입함

※ 경기도 : 인증완료 4(광명, 수원, 오산, 화성)  
준비 중 3(부천, 시흥, 용인)

## 지방정부협의회가입 절차

1. 협의회 규약을 지방의회(안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152조 의거 고시
2.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협의회 가입 신청서 제출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무국 승인 후, 부담금(연회비) 납부

## □ 규약 주요내용

### ○ 제1조(목적)

-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 제2조(기능)

-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
-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
-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 ○ 제3조(구성)

-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됨

### ○ 제4조(임원 및 조직)

-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음

### ○ 제5조(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함

### ○ 제6조(회의 및 의결)

-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는 장이 됨.
- 협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 ○ 제7조(의안의 제출)

- 회장은 회의개최 30일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함

###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함

### ○ 제11조(실무협의회 등)

- 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함.

○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

○ 제16조(가입 및 탈퇴)

-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함.
-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함.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관련사업계획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계획**(여성가족과-36398(2018.11.12.))

## □ 예산 수반사항

○ 유니세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연회비) : 5,000천원/년

### ※ 협의회 부담금 집행사업

-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신증진에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붙임 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1부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사업계획(시장방침결재) 1부